

의안번호	2211423
의 퇴 인	서왕진의원
회 답 일	2025.7.15.
추계번호	25D3689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1) 정원 68명 가정, 총 334억 1,900만원(연평균 83억 5,500만원)
- (시나리오2) 정원 102명 가정, 총 501억 2,800만원(연평균 125억 3,200만원)
- (시나리오3) 정원 136명 가정, 총 668억 4,000만원(연평균 167억 1,000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정원 68명)	6,707	8,694	8,902	9,116	33,419	8,355
시나리오2 (정원 102명)	10,059	13,041	13,354	13,674	50,128	12,532
시나리오3 (정원 136명)	13,413	17,388	17,806	18,233	66,840	16,710

주: 본 추계는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규모를 진화위 정원 대비 50%(시나리오1), 75%(시나리오2), 100%(시나리오3)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정원, 직급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윤석열에 의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 (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4. 진상규명결정 결과에 따른 책임 및 피해회복방안 제시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이 법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의무규정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순서의 정당 2곳이 추천하는 각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제2항)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그 밖에 제2조 제1항 각 호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의무규정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하고(제4항),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제5항),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함(제6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진상조사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15조(사무처의 설치)	위원회의 진상조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제1항),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5	안 제26조(청문회의 실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30조(검증)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31조(조사기간)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조사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진상조사활동을 함(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상조사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8	안 제41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46조(피해 및 명예 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1항)	의무규정
10	안 제51조(사무처의 존속 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제41조 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후 3개월간 존속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윤석열에 의한 검찰권 오남 용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	
2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	
3	안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	
4	안 제15조(사무처의 설치)	○	
5	안 제26조(청문회의 실시)	○	
6	안 제30조(검증)	○	
7	안 제31조(조사기간)	○	
8	안 제41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9	안 제46조(피해 및 명예회복)	×	현시점에서 피해자 및 유족의 규모, 피해 회복 조치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10	안 제51조(사무처의 존속기간)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유사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조직을 참고하여 그 규모를 추정하여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로 구분하여 추계함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는 법률체계, 그 입법목적(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 기틀 마련), 상임위원의 직급과 인원, 위원회 소관 업무(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책임 및 피해회복방안 제시 등) 등을 고려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라 함)와 유사한 조직 형태로 설립되는 것으로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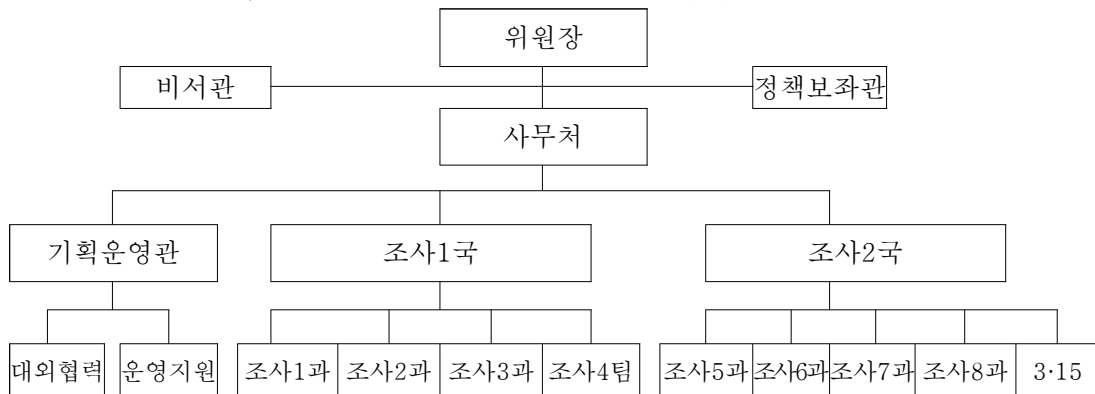
[표 2] 유사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비교

구분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안)
근거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안
소속	대통령	—	—	—
지위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권한	국무회의 출석·발언/ 총리의안 제출 건의/ 국회출석·의견진술	국무회의 출석·발언/ 총리의안 제출 건의/ 국회출석·의견진술	—	—
위원구성	5명 대통령지명·임명 (2) 국회추천·대통령임명 (3)	11명 대통령지명·임명 (4/상임1) 국회선출·대통령임명 (4/상임2) 대법원장지명·대통령 임명(3)	9명 대통령지명·임명 (1/상임1) 국회선출·대통령임명 (8/상임2)	9명 대통령지명·임명 (1/상임1) 국회선출·대통령임명 (8/상임2)
위원장	1명 (장관급)	1명 (장관급)	1명 (장관급)	1명 (장관급)
부위원장	1명 (차관급)	—	—	—
상임위원	3명 (차관급)	3명 (차관급)	2명 (차관급)	2명 (차관급)
비상임위원	—	7명 (63%)	6명(67%)	6명(67%)

구분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안)
위원임기	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2년 (연임 가능)	2년 (연임 가능)
의사(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분과위 등	—	소위 6, 전문위 12	소위 2, 화해위 1, 종합보고서위 1	미정
사무기구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가급)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가급)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가급)	미정
하부조직	3국 3관 19과 4팀	4국 2관 20과	2국 1관 11과	하위법령 위임
소속기관	방송통신사무소 4개 (지역분소 3개 포함)	지역 인권사무소 5개	—	—
정원	283명 (본부 239, 소속 44)	246명 (본부 203, 소속 43)	136명 (정원 외 임기제 26명 제외)	하위법령 위임
2025년 예산 (일반회계, 백만원)	48,738	42,414	16,763	—
인건비	25,407	21,864	6,811 (정원 81명+정원 외 26명 포함)	—
기본경비	3,563	10,131 (청사임차 40.9억원)	6,686 (청사임차 35.2억원)	—
사업비	19,768	10,419	3,266	—

자료: 각 기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그림 1] 現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직도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와 진화위 간 조사대상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규모는 진화위(정원 136명)의 50%(정원 68명), 75%(정원 102명), 100%(정원 136명) 수준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2019.7.25.~2025.4.4.) 중 검찰권 오남용 사건
 - 진화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 본 추계에서 위원회의 인건비는 2025년 예산 기준 진화위의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고,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인건비 대비 각각의 비중을 적용하며,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추정함¹⁾
- 진화위의 정원은 136명이고, 이 중 진화위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은 81명 (59.66%)이며, 파견직원 55명(40.44%)은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함
 - 본 추계에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인력도 진화위의 정원 운용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1조²⁾에서 최대 조사기간을 3년으로 하며, 안 제41조제2항³⁾ 및 제51조⁴⁾에서 종합보고서 작성기간 6개월, 잔존업무 처리기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 9개월로 함

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전망 (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자산취득비 단가(천원)	4,981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제31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조사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진상조사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상조사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제41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제51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제41조 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후 3개월간 존속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인건비는 최근 4년(2022~2025년) 진화위의 평균 인건비에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최근 4년 진화위의 평균 예산액과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와 사업비 비중은 다음과 같음

[표 3] 現 진화위 예산내역: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평균 (2022~2025)
인건비	5,251	6,094	6,520	6,811	6,169 (100%)
기본경비	5,924	5,954	6,800	6,686	6,341 (102.8%)
사업비	2,566	7,029	3,429	3,266	4,073 (66.0%)
합계	13,741	19,077	16,749	16,763	16,583

주: 2020년과 2021년은 인력과 사업이 모두 반영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므로 제외함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추계결과, 진화위의 정원 대비 50%(시나리오1, 68명), 75%(시나리오2, 102명), 100%(시나리오3, 136명) 수준으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건비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인건비의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인건비	시나리오1 (정원 68명)	2,369	3,234	3,312	3,391	12,306
	시나리오2 (정원 102명)	3,553	4,851	4,968	5,087	18,459
	시나리오3 (정원 136명)	4,738	6,469	6,624	6,783	24,614

주: 2026년은 추계기간이 9개월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산정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기본경비 및 사업비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진화위의 인건비 대비 기본 경비 비중(102.8%)과 사업비 비중(66.0%)을 적용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연도별 인건비에 각각의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기본경비와 사업비의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기본경비	시나리오1 (정원 68명)	2,435	3,325	3,404	3,486	12,650
	시나리오2 (정원 102명)	3,652	4,987	5,106	5,229	18,974
	시나리오3 (정원 136명)	4,870	6,649	6,809	6,972	25,300
사업비	시나리오1 (정원 68명)	1,564	2,135	2,186	2,239	8,124
	시나리오2 (정원 102명)	2,346	3,203	3,280	3,358	12,187
	시나리오3 (정원 136명)	3,128	4,270	4,373	4,478	16,2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자산취득비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자산취득비는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는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설치 첫해(2026년)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표 6]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자산취득비의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자산 취득비	시나리오1 (정원 68명)	339	-	-	-	339
	시나리오2 (정원 102명)	508	-	-	-	508
	시나리오3 (정원 136명)	677	-	-	-	6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1) 정원 68명 가정, 총 334억 1,900만원(연평균 83억 5,500만원)
- (시나리오2) 정원 102명 가정, 총 501억 2,800만원(연평균 125억 3,200만원)
- (시나리오3) 정원 136명 가정, 총 668억 4,000만원(연평균 167억 1,000만원)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정원 68명)	인건비	2,369	3,234	3,312	3,391	12,306	—
	기본경비	2,435	3,325	3,404	3,486	12,650	—
	사업비	1,564	2,135	2,186	2,239	8,124	—
	자산취득비	339	—	—	—	339	—
	소계	6,707	8,694	8,902	9,116	33,419	8,355
시나리오2 (정원 102명)	인건비	3,553	4,851	4,968	5,087	18,459	—
	기본경비	3,652	4,987	5,106	5,229	18,974	—
	사업비	2,346	3,203	3,280	3,358	12,187	—
	자산취득비	508	—	—	—	508	—
	소계	10,059	13,041	13,354	13,674	50,128	12,532
시나리오3 (정원 136명)	인건비	4,738	6,469	6,624	6,783	24,614	—
	기본경비	4,870	6,649	6,809	6,972	25,300	—
	사업비	3,128	4,270	4,373	4,478	16,249	—
	자산취득비	677	—	—	—	677	—
	소계	13,413	17,388	17,806	18,233	66,840	16,710

주: 본 추계는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규모를 진화위 정원 대비 50%(시나리오1), 75%(시나리오2), 100%(시나리오3)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정원, 직급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규모를 진화위 정원 대비 50%, 75%, 100%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정원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